

1. 개정이유

원료물질 등 취급자의 취급 물질 정보 등록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취급자의 취급물질 정보(연간 취급 수량, 방사능 농도) 등록 시 최대량 등록으로 등록방법 개선(안 제2조제3항제1호)
 - 현행 법령에 따라 등록한 취급물질의 정보(종류, 연간 취급 수량, 방사능 농도)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급자는 사전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등록변경에 따른 유통 지연 민원과 등록 변경 시기 미준수 등에 따른 법 위반 다수 발생
 - 취급 수요 변동이 잦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다른 법령처럼 최대량을 등록하도록 개선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반 마련
- ※ (원자력안전법)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(시행령 제79조제3항)
-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(별표1)
 -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을 ‘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’에서 ‘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’로 수정
- ※ 동 규칙 별표2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·보관·보고 및 제출기준 자구 인용
- 취급자의 물질정보 등록방법 개선을 위한 서식 수정(별지 제1호서식)
 - ‘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’를 ‘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

방사능 농도'로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 중 “연간 취급 수량”을 “연간 최대 취급 수량”으로, “방사능 농도”를 “최대 방사능 농도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제1호마목의 보고기한란 중 “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”를 “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”로 하고, 같은 호 제2호라목의 보고기한란 중 “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”를 “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제1호 중 “연간 취급 수량”을 “연간 최대 취급 수량”으로, “방사능 농도”를 “최대 방사능 농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원료물질 · 공정부산물	취	제2조(원료물질 · 공정부산물	취	
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		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		
등록) ① · ② (생략)		등록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법 제9조제4항에서 “총리령		③ -----		
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		-----		
호의 서류를 말한다.		-----.		
1.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		1. -----		
공정부산물의 명세서(물질의		-----		
종류, <u>연간 취급 수량</u> 및 <u>방사</u>		--- <u>연간 최대 취급 수량</u> ---		
<u>능 농도</u> 를 포함한다)		----- <u>최대</u>		
		<u>방사능 농도</u> -----		
2. ~ 5. (생략)		2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④ · ⑤ (생략)	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		